

## I. 서론

## II. 금융의 안정

1. 금융감독청의 새로운 역할로서의 금융 안정
2. 금융 안정화와 관련된 정보 요구

## III. 소비자 보호

1. 소비자 금융 교육 단체의 설립
2. 소비자 보상 계획
3. 신용카드수표 발행에 대한 제한

## IV. 보수

## V. 기업 희생과 문제 해결 방안

## VI. 공매

## VII. 금융감독청의 권한

## VIII. 결론

## I. 서론

2007년 초 미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부실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급속히 국제 경제를 침체시키고 금융 시장에 위기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으로 2008년 전년 대비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도 경제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영국 또한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고 2008년 전년 대비 -2.3%의 경제성장

# 영국 금융법제의 최신 동향: Finance Services Act 2010

변혜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교수

를 보였으며, 파운드화의 가치가 급락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여러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영국의 경기침체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오래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영국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우려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으로 영국 정부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0; 이하 ‘2010년 금융서비스법’)'을 2010년 4월에 도입하였다. 영국 정부는 2009년 7월 금융서비스법안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이 법안을 통하여 금융감독청에 효율성과 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2009년 11월에 최초의 금융서비스법안이 소개되었고, 이후 원래의 법안에서 많은 조정이 가해진 모습으로 2010년 4월 왕실의 재가를 받게 되었다.<sup>1)</sup>

2010년 금융서비스법은 2000년에 금융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금융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률(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을 개정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2010년 금융서비스법에서는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에 새로운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재무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 보상 계획(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과 2009년 은행법(Banking Act 2009)에 관한 내용도 일부 담고 있다. 다음에서는 2010년 금융서비스법이 통과된 이후 변화된 금융감독청의 역할과 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II. 금융의 안정

### 1. 금융감독청의 새로운 역할로서의 금융 안정

과거 2000년 금융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감독청의 역할로 (i) 금융제도에 대하여 신뢰를 유지하고, (ii) 금융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iii) 소비자를 보호하고, (iv) 금융범죄를 감소시키는 것 등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었다. 2010년 금융서비스법은 이에 더하여 금융감독청은 경제정책의 핵심주체를 이루는 3자 중 나머지 2곳인 재무부(HM Treasury)와 잉글랜드 은행(Bank of England), 그리고 기타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금융체제를 보호하고 그 안정성을

1) 영국 정부는 2010년 5월 6일에 총선을 앞두고 2009-2010 의회의 회기가 짧아 시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금융서비스법안을 총선과 의회의 해산 사이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정리절차(‘wash-up’ process) 중에 통과시키기 위하여 원래 법안에서 정치적으로 논쟁이 심했던 조문들을 제외시켰다.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sup> 따라서 금융감독청은 경제와 금융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사안들과 국내 금융 안정에 영향을 주는 국제 상황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2. 금융 안정화와 관련된 정보 요구

금융감독청은 금융 안정 전략을 수립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나 정보를 요구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금융감독청은 영국에서 설립된 회사나 그 회사의 경영자, 투자자가 발행하는 금융상품을 구성하거나 또는 그러한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자산으로 구성된 투자펀드에 관한 정보와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 요구는 외국 정부가 자국 금융체제의 안정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정보 제공의 의무를 지는 자에는 (i)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나 국내에서 설립된 단체에 의하여 발행된 금융상품을 구성하는 자산이나 이러한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자산으로 구성된 펀드에 대하여 법적 또는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 (ii) 이와 같은 펀드에 대하여 관리 책임이 있는 자, (iii) 금융감독청이 인가한 기업(authorized firm)에 대하여 특정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제공되지 아니하여 금융체제의 안정성이 크게 침해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v) 재무부가 정하는 자, (v) 이들과 관계된 자 등이 있다.

이들 규정들은 매수 전략 채택 펀드(long-only fund)와 대체 자산 펀드(alternative asset fund; 예를 들어, 헤지 펀드(hedge fund), 사모 펀드(private equity fund), 부동산 펀드(real estate fund) 등)는 물론 이들 상품의 투자 담당자와 관리자, 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

## III. 소비자 보호

### 1. 소비자 금융 교육 단체의 설립

이전에는 금융감독청이 자체적으로 일반인이 금융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금융서비스 법안에서 이와 같은 금융감독청의 의무를

2) 관련 단체들 중 하나로 금융안정위원회(Council for Financial Stability)가 있는데, 사실상 금융안전위원회에 관한 의견들이 금융서비스법안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고, 또한 금융서비스법이 제정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금융안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법안이 결국 금융안전위원회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지 않게 되어 현재로서는 해당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면제하기로 하였다. 대신 2010년 금융서비스법에서는 금융감독청이 금융문제와 금융활동 관리에 관한 소비자 교육을 위하여 규제대상 금융기관(regulated firm)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독립적인 금융교육 단체(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를 새로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 설립되는 교육단체는 금융감독청이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의 일부로 수행해 온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제도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금융업계로서는 이 제도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서비스 비용, 소비자 불만 등을 줄일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또한 금융교육을 받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금융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2. 소비자 보상 계획

금융위기 상황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청에 소비자 보상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 제도는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은행과 금융기관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 금융감독청은 기업들에게 스스로 관련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 도입된 규정에 의하면 금융감독청은 금융 옴부즈맨 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와 협의를 거쳐 기업에게 소비자 보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금융감독청의 이러한 권한은 (i) 규제대상 기업이 공연히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ii) 그 의무 불이행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어 그 보상이 법적 절차상 가능한 경우 (iii) 보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등에 행사될 수 있다. 여기서 '소비자'라 함은 일반 개인뿐만이 아니라 규제대상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또는 이용을 고려한 자, 그리고 관련 서비스로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자(예를 들어 신탁의 대리인이나 수령인과 거래를 한 자)도 포함한다.

금융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기업들은 스스로 자신이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의 여부와 불이행의 성격과 범위, 해당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자신의 불이행과 소비자의 손해가 밝혀진 경우 소비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소비자가 기업의 소비자 보상 계획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금융 옴부즈맨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금융 서비스 옴부즈맨은 문제가 된 보상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비추어 해당 불만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 보상 계획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금융감독청의 광범위한 권한은 금융서비스조사위원회(Financial Services Tribunal)의 심리 대상이 된다. 2010년 금융서비스법은 집단소송에 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 3. 신용카드수표 발행에 대한 제한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과 소비자단체는 신용카드 수표(credit card cheque)와 관련된 관행, 그 중에서도 수표의 성격과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현상에 대하여 우려해왔다. 이에 2010년 금융서비스법은 소비자의 신청 없이 신용카드 발행자가 신용카드 수표를 보내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신청에 의해 발행하는 수표도 3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은 사업을 영위하는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IV. 보수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금융 산업분야의 보수에 관한 문제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0년 금융서비스법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금융감독청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대규모 은행과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 금융 증권 중개인(broker-dealer) 등 사실상 26개 단체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2010년 금융서비스법의 도입으로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금융감독청은 기업에 대하여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기준에 부합하게 보수를 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금융감독청은 기업의 보수 체계가 위험관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체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보수 지급 방식을 금지할 수도 있다. 기존에 체결된 보수 관련 계약은 새롭게 도입된 이들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으나, 이에 위배되는 방향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 보수 관련 규정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금융감독청의 보수 조항(FSA's Remuneration Code)을 더욱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청의 보수에 관한 권한과 함께 재무부도 인가 기업들에 대하여 간부와 임원, 고용인, 고문의 보수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무부는 보수에 관한 보고서가 2006년 회사법(Company Act 2006)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V. 기업 회생과 문제 해결 방안

금융감독청은 규제대상 기업의 사업 일부만이라도 소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각도로 추진해오고 있었으며, 상당수 주요 은행들이 이미 소위 '사망 선택 유언(Living Will)'을 시범적으로 마련해오고 있었다. 2010년 금융서비스법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감독청은 2009년 은행법(Banking Act 2009)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비롯하여 특정 기업들에 대해 기업 회생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Recovery and Resolution Plan)으로서 'Living Will'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규정을 정하는데 있어 금융감독청은 재무부와 잉글랜드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국제 기준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회생 계획(Recovery Plan)은 인가 기업이 사업의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는 그러한 상황이 예상되는 시점에 요구되는 행위를 정하여 돕으로써 인가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회생 계획에는 구조조정 방안이나 일부 사업이나 자산의 축소나 매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문제 해결 방안(Resolution Plan)에서는 인가 기업의 일부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3자(해당 기업 이외의 인가 기업 또는 관리자 등)에게 해당 인가 기업의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규정한다. 문제 해결 방안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시된 해결 방법을 적용하거나 인가 기업이 파산한 경우 파산 담당 공무원(insolvency official)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해결 방안과 공무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가 기업의 회생 계획과 문제 해결 방안에는 항상 최근의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청은 인가 기업에 대하여 기업 회생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을 가지며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영향력이 큰 기업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둘 수 있다. 금융감독청은 인가 기업이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갱신과 수집을 담당할 자를 지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VI. 공매

2008년에 도입된 공매(short selling) 관련 규정은 입법이 서둘러 진행되었던 탓에 그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다. 2010년 금융서비스법에서는 금융감독청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공매(short-selling)를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010 금융서비스법은 금융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률에 (i) 금융감독청은 공매가 금지된 자에 의한 특정 금융상품의 공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고, 또한 (ii) 특정 금융상품의 공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규정이 만들어진 당시 매수 포지션(short position)이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open position)로 여전히 남아 있다면 해당 공매에도 적용된다. 양자의 규정들은 금융감독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인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영국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허가된 금융투자자와 관계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행해지는 공매에도 적용된다.

공매 규정에서의 ‘공매’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금융상품을 매도하고 이렇게 공매를 행한 자가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을 공매의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의 대여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가격이 하락하여 이익을 얻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공매 대상 금융 상품(shorted instrument)과 종류가 다른 금융상품으로 거래에 참가한 경우 공매 대상이 된 금융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거래참가자에게 수익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청은 금융체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거나 금융체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협의없이 특정 기간 동안 금융상품에 대한 공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긴급제정권도 가진다. 과거에는 공매에 관한 긴급 규정은 3개월까지만 존속이 가능하였으나, 새로운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감독청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규정을 만드는데 있어서 공매에 관한 국제협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매에 관한 규정이나 정보 요구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청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무제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금융감독청은 또한 해당 행위에 대하여 공공 불신임(public censure)을 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청은 이와 같은 강제조치를 4년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단 그 기간 내에 금융감독청이 당사자에게 경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기간은 금융감독청이 당사자가 공매에 관한 규정이나 정보 요구를 위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기산된다.

## VII. 금융감독청의 권한

2010년 금융서비스법은 금융감독청을 강력한 권한 집행자로서 인식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소비자 보호 목적뿐만이 아니라 금융감독청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입법권한과 허가권한, 개입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감독청의 강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첫째, 금융감독청은 규제대상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 받은 기업이 규제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그 행위 수행에 대한 허가(permission)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는 12개월을 넘지 못하며, 개인에 대한 승인의 유예는 2년 동안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감독청이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행하는 인가 기업에 대한 허가를 유효하게 유예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유예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둘째, 금융감독청은 기업이 규제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기업에 대한 인가(authorization)를 취소할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감독청에 의한 벌금 부과와 인가의 취소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2010년 금융서비스법에서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감독청은 인가 기업이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게 되었다.

셋째, 금융감독청은 승인 없이 이루어진 지배행위(controlled function)에 대하여 금융규제를 가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미 인가 기업은 금융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규제 대상 행위와 연관된 지배행위를 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권한이 금융감독청에 부여되지 않았었다. 2010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은 지배행위를 행하는 자가 자신의 행위가 지배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 수 있었다고 기대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지배행위에 대하여 처벌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넷째, 2010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청은 승인(approval)을 받은 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승인을 유예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융감독청이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



## VIII. 결론

2010년 금융서비스법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감독청은 규제대상 기업에 대하여 허가를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처벌을 가할 수도 있으며 인가를 철회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청의 승인이 필요한 규제 대상 행위를 승인 없이 행한 경우에도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등 금융감독청의 권한은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그 범위 또한 확대되었다. 최근 금융감독청 스스로도 2010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하여 새로이 부여 받은 모든 권한들을 공격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들은 금융감독청이 효과적이고 강력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나아가 금융감독청이 확실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문에서 정리해 본 항목들 중 2010년 금융서비스법이 통과되었을 당시 언론의 관심은 금융서비스법에 위반하는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의(bonus arrangement)와 회생 계획과 문제해결 방안으로서의 'Living Will'과 관련된 규정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현실적으로 규제대상 기업에게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부분은 소비자 금융 교육단체의 설립과 소비자 보상 제도 등이다. 또한 현재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금융감독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금융 안정화를 위한 정보요구에 관한 권한에 대한 것이다. 차후에는 해당 정보요구의 대상 범위가 규제대상 기업의 투자자(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뿐만 아니라 수익에 있어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포함)와 경영자, 관련 투자 펀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자와 함께 이들과 연관된 자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더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이전 정부는 금융서비스법안 내용 중에서 (i) 금융안정을 위한 자문회의, 즉 금융안정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영국 은행과 재무부, 금융감독청의 책임과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단체의 구성, (ii) 금융감독청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감독 홍보 의무, (iii) 단체소송행위, 즉 많은 수의 패소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소비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집단적 절차를 법원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법안에서 제외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도 이들 사안을 다시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금융서비스법안의 내용 중 2010년 금융서비스법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미래의 영국 금융규제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하여 다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국 금융법제의 최근 경향을 보면, 장차 영국 금융정책을 이끌고 갈 핵심기관이 금융감독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영국 은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금융정책의 주체와 관계 없이 규제대상 기업의 회생과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절차의 진행,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더욱 강력하고 철저한 감독과 집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